

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

“사망사고 다발 고위험 작업·설비 개선 비용 지원”

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, 공단의 **기술지원** 결과에 따른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유해·위험요인 개선비용 일부(최대 70%)를 지원해드립니다.



지원대상

-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건설업 제외)
- 이동식크레인·고소작업대·굴착기·로더·타워크레인·지게차 보유 또는 임대사업주(방호장치 지원 한정)
- 태양광(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업) 및 엘리베이터(50인 미만 건설업본사) 설치 작업 시행 사업장
* 당해 연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또는 공단 융자금 지원결정 사업장은 지원 불가
(단,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은 중복 지원 가능)

지원대상 제외

- 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
- ② 근로자 미고용(산재보험 미가입)
- ③ 산재보험 체납
- ④ 국가·지방 등 공공단체
- ⑤ 지원한도 초과
- 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
- ⑦ 부정수급 등 참여제한 사업장 등

지원금액

- 사업장 당 최대 3,000만원 까지(공단 판단금액의 70% 또는 정액(일부품목) 지원)
* 기존 보조지원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받은 금액을 차감한 총 보조한도액(3,000만원)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- 끼임·추락·화재폭발 등 사고사망 예방품목*(후면 예시 참조)



*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(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)

신청방법

서식다운

- 온라인 신청 : clean.kosha.or.kr
- 제출서류 :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류 일체
[클린 홈페이지\(clean.kosha.or.kr\) » 클린사업 안내 » 서식모음 및 자료실](#)
- 연중 수시(재원 소진 시 까지)

* 보조금 신속지원 (Quick-Pass)

공단 패트를 현장점검 결과, 끼임·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유해·위험요인 개선비용 일부(70%)를 지원해드립니다.

지원대상

- 당해 연도 패트를 현장점검 사업장 중 지원 희망 사업장(50인 미만 사업장(건설업 제외))

지원금액

- 사업장 당 최대 70만원 까지(사업장 소요금액(100만원 이내)의 70%)(연 1회 한정)

* 기존 보조지원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보조한도액(3,000만원)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
지원품목

- 끼임·추락 예방설비*(후면 예시 참조)



신청방법

서식다운

- 유해위험요인 개선 후 개선비용 지원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

[클린 홈페이지\(clean.kosha.or.kr\) » 클린사업 안내 » 서식모음 및 자료실](#)

*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불필요

시행기간

- 연중 수시(재원 소진 시 까지)

문의 1544-3088

| 클린사업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 » 알림마당 » 지역별 문의처 참고

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
끼임·추락 등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

Quick-Pass 지원가능 품목



끼임방지 시설

방호덮개, 롤러기·컨베이어 안전장치 등



추락방지시설

안전난간, 안전방책, 개구부덮개, 이동식 사다리 등



지게차·건설기계(굴착기,로더) 충돌예방설비

충돌예방설비(전후방카메라, 감지센서 등)



프레스·전단기 안전장치

광전자식, 양수조작식, 재기동 방지장치 등



기동스위치·잠금장치 표지판

근로자 10인당 1set



산업용 로봇 방호장치

방호율, 라이트카튼, 안전매트 등



산업용리프트·승강기 안전장치

방호율, 과부하방지장치 등



크레인 안전장치

비상정지장치, 무선원격제어기 등



화재·폭발 예방 설비

환기팬, 포소화설비, 가스감지장치 등



질식재해 예방설비

호흡용보호구, 가스측정장비, 환기설비



국소배기장치

* 특별관리 또는 안전검사 대상물질 등



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

* 클램프 능력, 타입에 따른 차등



원료송급 및 취출 자동화설비

프레스, 전단기, 사출성형기, 자동화 설비



소음방지시설

*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



안전검사 불가 천장크레인 (3톤미만) 교체

* 09년 이전설치 제작 및 설비구조 불량에 한함



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방호장치

권과·전복·과부하방지장치



소형타워크레인 안전장치

*3톤 미만 무인식 한정



**필수 노동자(배달종사자 등)
근무환경개선 품목**

컨테이너하우스, 샤워부스, 냉난방기



콜센터 등 집단감염 예방 품목

간이칸막이, 체온계, 열화상카메라



고소작업대(안전인증품)

* 품목당 1,000만원 이내 지원



공단직원의 금품·향응 수수, 공급업체의 페이백 권리 등 부패행위는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청렴윤리신고센터 또는 052-245-81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고용노동부

